

### 경운대학교 외국인교원임용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외국인교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경운대학교 외국인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, 정관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교원의 구분) 외국인교원의 직위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한다.

제4조(자격) 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운대학교의 초빙 목적에 부합하는 업적을 갖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임용절차) ① 외국인교원은 해당학부(과)장이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총원을 요청하고, 총장의 승인을 얻어 모집 선발한다. <개정 2021.10.01.>  
② 외국인교원은 해당학부(과)장의 추천과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.<개정 2021.10.01.>

제6조(임용시기 및 기간) ① 외국인교원은 매 학기 초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 
②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고, 필요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임용한다.  
③ 외국인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.

제7조(구비서류) 외국인 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- 1. “삭제”
- 2. 이력서 1부
- 3. 학력증명서 각 2부
- 4. 성적증명서 각 2부
- 5. 경력증명서 각 2부
- 6. 교원임용계약서 1부
- 7. 증명사진 2매
- 8. 외국인 등록증 사본(여권 사본 포함) 1부

제8조(임용계약) ① 임용계약은 당사자간 개별 체결한다.  
② 임용계약에는 임용기간, 임무, 보수, 대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.

제9조(당연퇴직) 외국인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- 1.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만료일에 달한 때
- 2. 경운대학교 「교원인사규정」 제27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
- 3. 이 규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기간 내에 재임용되지 못하였을 때

제10조(직권면직) 외국인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, 총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
- 1.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

- 2.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평가 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
- 3. 교원관계 법령 및 경운대학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
- 4. 인사기록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하였을 때
- 5. 수업관리 미준수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

제11조(보고) 외국인교원을 임용한 때에는 그 임용사항을 지체 없이 학교법인 송선학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,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21.10.01.>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